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343호
------	-------

2021년 09월 09일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07. 30. 송파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1. 09. 01.
- 다. 상정일자 : 2021. 09. 09. 제288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의 요지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가. 제안이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 관계 변동사항과 근거법령 등을 현행화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신고 사무의 동 주민센터 위임
- 그 밖의 관련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위임사무 반영 등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16조, 제33조
- 「의료급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8조의 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여성보육과(성별영향평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철구)

○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별표에서 ① 상위법의 위임 근거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② 개정된 법령 근거 조항을 반영함으로써 관련 사무의 적시성 및 현지성의 원칙을 확보하려는 것임.

- 또한, 부칙에서 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사항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조례 개정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을 종합 검토한 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위임사무를 신설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함.

4. 질의 및 답변

【 질의 : 김득연, 이성자, 정명숙, 박경래 위원 】

- 답변 :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 사무 위임을 하게 되면 책임과 의무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 문제 발생 시 수임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 아닌지?
 - 사무 위임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위임되는 사무의 대부분은 비교적 경미한 업무해 해당됨. 또한, 중대과실 등 문제 발생 시 최종적인 책임은 위임기관에서 지게 됨.
- 별표 16호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 중 장애진단이나 장애등급의 조정과 같은 전문적인 사무를 수임기관에서 판단 가능한 것인지?
 - 해당 사무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을 하게 되는 것으로 실제 장애 등급 판단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가 아닌, 전문기관의 등급 판정에 따른 사실을 단순 입력하는 서비스 처리 등에 관한 사항임.
- 별표 26호에 따른 사무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에 따른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인지?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명만 해도 되며, 부동산의 위임을 통해서도 가능함. 현재 임대차 변경 또는 해제에 따른 신고를 1년간 뉴예를 두고 있으며, 내년 6월 1일 이후 30일 이내 신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